

## 경운대학교 재입학에관한규정

**제1조(목적)** 경운대학교(이하 “우리대학교”라 한다) 재학 중 경제적 사유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적된 학생들에게 면학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재입학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재입학 인원산출)** 재입학 인원은 재입학 허가년도를 기준으로 직전 학기 또는 직전학년도(4월 1일, 10월 1일)의 3·4학년 제적자 수를 전체 정원 내·외 및 주·야로 구분하여 산정하고, 총장의 승인을 받아 편입학 여석을 재입학 여석으로 활용할 수 있다.

**제3조(재입학 대상자)** 재입학 허가대상자는 미등록 및 경제적, 신체적 사유 또는 군입대시 학적 절차 미이행 등으로 제적된 자로 하되 제적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재입학이 가능하다.

**제4조(재입학 허가 절차)** ①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 학부(과)장을 경유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교무처에 재입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재입학원서(소정서식) 1통
2. 재입학 사유서 1통
3. 성적증명서 1통
4. 학적부 사본 1통

② 재입학의 허가는 원적 학과에 한한다.

③ 재입학 희망 인원이 재입학 가능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학과별로 성적순에 의하여 허가한다.

④ 재입학 심사는 소속 학부(과)의 심사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.

**제5조(재입학 시기)** 재입학의 시기는 매 학기초로 한다.

**제6조(학점인정 및 이수)** 재입학의 이전 취득 학점은 그대로 인정하고 잔여학점은 현 교과과정에 의하여 이수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재입학 제한)**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.

1. 징계제적자
2. 이중학적 보유자
3. 기타 학교가 재입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

**제8조(학칙준용)**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